

사업실명제 등록번호	2023-72	담당부서 작성자	산업안전보건인증원 / 안전인증부 (김성익 차장/052-703-0902/ ksi9770@kosha.or.kr)
사업명	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 안전인증		
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○ 추진배경 : 크레인 등 유해·위험기계·구에 대하여 설계·제조·설치단계에서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여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생산·보급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○ 추진기간 : 2009.01.01.~ 계속 ○ 총사업비 : 3,863백만원 ○ 주요내용 -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(프레스 등 10종*) * 프레스, 전단기, 절곡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 -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(산업용로봇 등 23종*) * 연삭기 또는 연마기, 산업용로봇,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, 식품가공용기계(파쇄·절단·혼합·제면기), 컨베이어, 자동차정비용 리프트, 공작기계(선반, 드릴기, 평삭형삭기, 밀링),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(등근톱, 대패, 루타기, 띠톱, 모떼기), 인쇄기 ○ 추진경과 - 2009.01.01.~현재 :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도입·시행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개정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(자율안전확인신고) 개정 - 2012.01.26. :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조정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7조 개정 * 안전인증(8종→11종) : 절곡기, 곤돌라, 기계톱 추가 ** 자율안전확인신고(3종→24종) : 종전 곤돌라, 공기압축기, 원심기에서 현행 24종으로 변경 - 2020.01.16.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조정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, 제77조 개정 * 안전인증(11종→10종) : 기계톱 제외 ** 자율안전확인신고(24종→23종) : 기압조절실 제외 - 2020.01.16. :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제도 도입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 신설(성능시험 등)		
사업수행자 (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)	○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- 최초 입안자 : 안전인증실 1급 정재종 - 최종 결재자 : 이사장 노민기		

